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1.13.(화) 조간	배포	2026.1.12.(월)
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	책임자	팀 장	김수진	(02-3145-8285)
		담당자	조사역	김태기	(02-3145-8523)

"상장시 대박"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? 사기부터 의심! (주의 → 경고)

▣ 소비자경보 2026 - 1호			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Ⅰ 경보발령 배경

▶ **(경보 등급 상향)** **신속한 수사의뢰**('25.9.1., 12.11.) 및 **사기이용계좌**에 대한 **금융거래제한**('25.12월) **조치**에도,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**동일 유형**의 **사기 범행**이 **지속**됨에 따라 **경보**를 **상향**↑

▣ '25.6.18. 비상장주식의 "상장임박"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"주의*"를 발령하였으나,

* ('25.6.13.)「비상장주식의 '상장임박'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」

○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**소비자경보 등급**을 "경고"로 한 단계 상향합니다.

▣ 특히,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고

○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*(FDS)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(계약금·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)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* FDS(FRAUD DETECTION SYSTEM) : 금융회사는 **고액 이체·해외송금·가상자산 출금** 등 **이상거래**로 **의심**될 경우 **자금용도**, **수취인 관계** 등을 확인하여 **거래제한 여부**를 파악

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❶ 상장임박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부터 의심
❷ 제도권 금융회사는 1:1 채팅방, 이메일,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
❸ 비상장회사의 재무현황, 투자위험 등 사업 정보는 투자자가 직접 확인
❹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
❺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(금융감독원☎1332, 경찰청☎112)

Ⅱ 최근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행태

※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를 기반으로 작성

< 범행수법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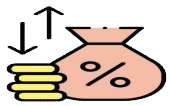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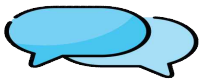			
1 **비상장주식 사전 매집** (1,000@×100,000주)	2 불특정 다수를 **리딩방**으로 **초대** 후 **상장예정 주식**을 나눠주며 **수익 실현 경험**을 **제공**	3 **허위상장 정보**를 배포하고 사전 매집한 **비상장 주식**을 주당 **40,000원에 매도**	4 **제3자로 위장**하여 해당 주식을 **60,000원**에 **매수**하겠다며 **접근**	5 투자자가 **비상장주식을 추가 매수**하면 이내 **잠적** (다른 종목으로 1부터 반복)

1 (유인) 문자 · 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

○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**사칭**한 불법업체는 **문자· SNS** 등에서 무료로 "급등종목 추천" 등을 해주며 불특정 다수를 **불법 리딩방**으로 초대

- **신뢰 관계 형성**을 위해 **실제 상장예정 주식**을 **무료**로 **입고**(1~5주) 해주며 **소액의 투자 성공** 및 **출금 경험**을 제공

2 (현혹) 고수익 실현 및 허위 상장 정보 등을 유포하며 매수를 권유

○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"**상장 임박**", "**상장 시 수배 수익**" 및 "**상장 실패 시 재매입** 및 **원금 보장**" 등 고수익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며 **기대심리**를 **자극**

- 동시에 **블로그·인터넷 신문사** 등에 **조작된 IR 자료**와 **허위 상장 정보**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**현혹**

인터넷 신문에 허위 상장 정보를 홍보*	가짜 IR 자료
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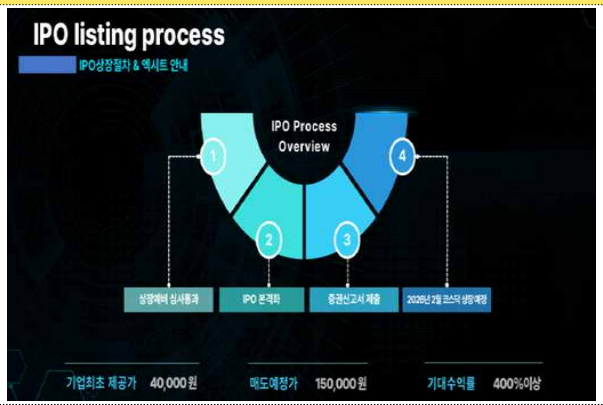

* 마케팅 대행 업체 등을 통해 허위 홍보성 기사를 배포

3 [바람잡이] 제3자로 위장하여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 후 잠적

○ 불법업체는 **제3자의 투자자** 또는 **대주주로 위장·접근**하여 주식 물량을 확보 중이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**고가**에 **매입**하겠다며 **거액**의 **재투자**를 **유도**

- 한편,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**이상거래 탐지**(FDS)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**본인 거래 확인** 전화 시 답변할 내용(계약금·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)을 **사전**에 **세밀**하게 **지시**하는 **치밀함**을 보임

대주주로 위장하여 추가 매수 유도	금융회사 모니터링 전화에 '거짓 답변' 안내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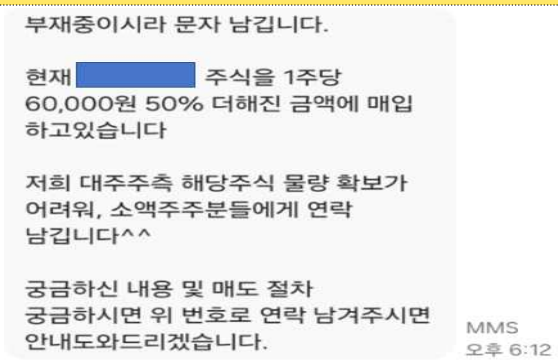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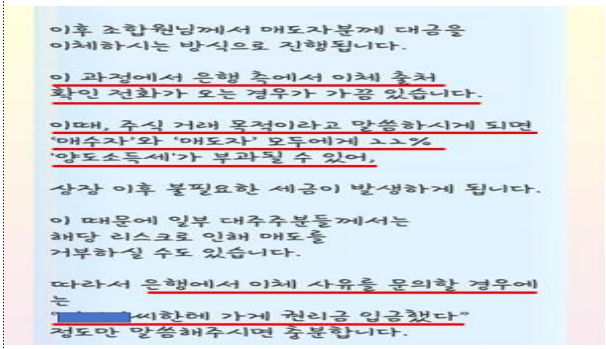

4 [반복 범행] 비상장주식 종목을 바꿔가며 동일 범행을 반복

○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으나 범행 형태와 동일한 **"재매입 약정서"**를 **보유**한 사실로 보아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**반복 범행**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

※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신속히 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('25.12.)

불법업체가 교부한 허위 '재매입 약정서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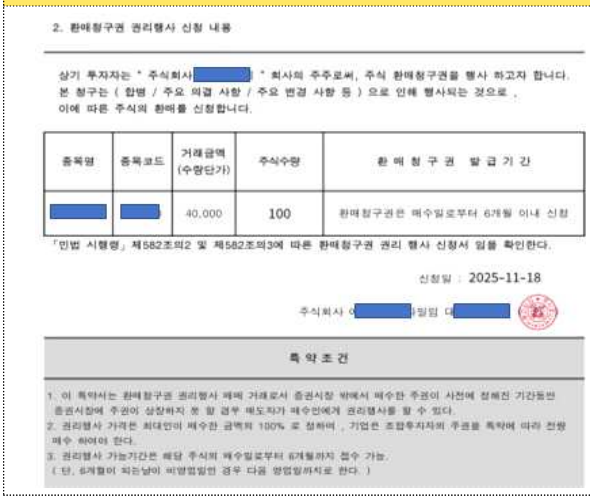

2.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신청 내용

상기 투자자는 " 주식회사[redacted] " 회사의 주주로써, 주식 환매청구권을 행사 하고자 합니다.
본 청구는 (합병 / 주요 의결 사항 / 주요 변경 사항 등) 으로 인해 행사되는 것으로 ,
이에 따른 주식의 환매를 신청합니다.

종목명	종목코드	거래금액 (수량단가)	주식수량	환 매 청 구 권 발 급 기 간
[redacted]	[redacted]	40,000	100	환매청구권은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「민법 시행령」 제582조의2 및 제582조의3에 따른 환매청구권 권리 행사 신청서 임을 확인한다.

신청일 : 2025-11-18

주식회사 [redacted]

특 약 조 건

1. 이 특약서는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매매 거래로서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한 주권이 사전에 정해진 기간동안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하지 못 할 경우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.
2. 권리행사 가격은 최대한이 매수한 금액의 100% 로 정하며 , 기업은 조합투자자의 주권을 특약에 따라 전량 매수 하여야 한다.
3. 권리행사 가능기간은 해당 주식의 매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접수 가능.
(단, 6개월이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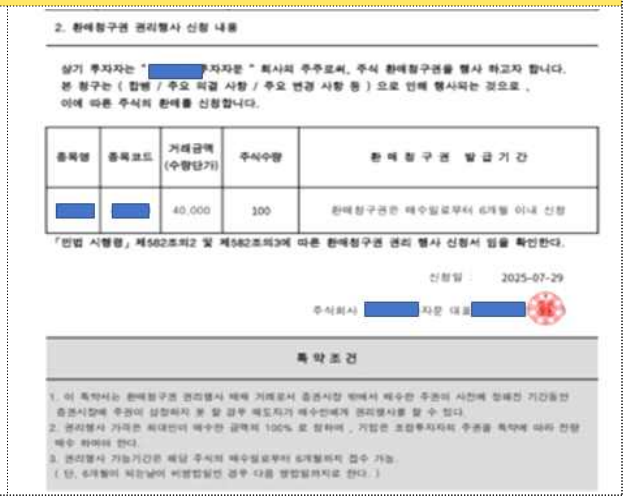

2.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신청 내용

상기 투자자는 "[redacted]주자자은 " 회사의 주주로써, 주식 환매청구권을 행사 하고자 합니다.
본 청구는 (합병 / 주요 의결 사항 / 주요 변경 사항 등) 으로 인해 행사되는 것으로 ,
이에 따른 주식의 환매를 신청합니다.

종목명	종목코드	거래금액 (수량단가)	주식수량	환 매 청 구 권 발 급 기 간
[redacted]	[redacted]	40,000	100	환매청구권은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「민법 시행령」 제582조의2 및 제582조의3에 따른 환매청구권 권리 행사 신청서 임을 확인한다.

신청일 : 2025-07-29

주식회사 [redacted]자은 대표 [redacted]

특 약 조 건

1. 이 특약서는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매매 거래로서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한 주권이 사전에 정해진 기간동안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하지 못 할 경우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.
2. 권리행사 가격은 최대한이 매수한 금액의 100% 로 정하며 , 기업은 조합투자자의 주권을 특약에 따라 전량 매수 하여야 한다.
3. 권리행사 가능기간은 해당 주식의 매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접수 가능.
(단, 6개월이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.)

Ⅲ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

1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

○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**증권신고서** 등의 **공시의무**가 부여되므로 DART에서 공시서류가 **조회**되지 않으면 투자에 **유의**

○ 한편,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 등은 **공시자료***로 **확인 가능**

* 한국거래소 (kind.krx.co.kr) →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 확인
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(dart.fss.or.kr) →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확인

2 제도권 금융회사는 1:1 채팅방, 이메일,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

○ **불법업체**와 **거래**로 인한 피해는 **금융감독원**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**피해구제**를 받을 수 없으므로, **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**에 연락하여 **사실관계**를 반드시 **확인**

3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 · 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,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

○ 비상장회사는 **재무현황**이나 **사업구조, 투자위험**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**스스로 회사**의 **실체**를 **파악**하기 위해 **노력할 필요**

4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

○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**인터넷 기사** 또는 **블로그 게시글**을 **작성**해주는 사례가 많음을 **유의**

5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(금감원☎1332, 경찰청☎112)

○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만 **범죄수익 은닉**을 **방지**하고 **추가 피해**를 **막을 수 있다는 사실**을 **명심**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 임 **금융감독원 홈페이지 內 불법금융투자 등 신고화면**

1 **(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)**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,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·신고

2 **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** 유사수신, 고금리 수취,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

1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

2)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

❶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

❷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